2026. 11.

미국 제5항소법원, 기사 임베딩의 현시권 침해 판단에서 '서버 테스트' 채택 거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1. 개요

2026년 8월 27일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Emmerich Newspapers, Inc. v. Particle Media, Inc.* 사건에서 뉴스 통합 서비스의 기사 제공에 관한 공중현시권(public display right)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1] 법원은 '서버 테스트'를 채택하지 않고, 실제 전달 주체와 전달의 허락 여부를 살피는 '전달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권한 있는 출처가 요청에 응하여 전달한 기사를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링크 제공자 자신의 무단 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 주소인 URL이 저작권관리정보(CMI)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판결문 23~29, 47~49면).

2.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Emmerich는 미국 내에서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Particle Media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모아 보여주는 NewsBreak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NewsBreak 이용자가 기사 목록에서 Emmerich의 기사를 선택하면, 앱 내부의 프레임에 해당 신문사의 웹페이지가 나타났다. "Framed View"라고 불린 이 방식에 의하면, 기사 데이터는 Emmerich의 서버에서 전달되었으므로, 만약 신문사가 원문을 수정하면 앱에 표시되는 내용도 달라졌다. Emmerich는 Particle에 기사 저장을 허락하고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제휴 신문사가 아니었다(판결문 3면, 6~7면).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기기에서는 기사가 NewsBreak의 서버에 저장되어 NewsBreak의 URL 아래 표시되는 "Full-Text View"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Emmerich는 이 과정에서 원래의 기사 URL이 제거되었고, 그 URL이 저작권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article은 이러한 제공 방식이 기술적 오류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인지한 후 수정되었다고

1) *Emmerich Newspapers, Inc. v. Particle Media, Inc.*, No. 25-60550 (5th Cir. Aug. 27, 2026). 이하 "판결문"으로 줄임.

덧붙였다(판결문 8~9면).

연방지방법원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위 Full-Text View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반해 Framed View에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서버 테스트를 적용하여 현시권 침해를 부정했고, URL은 CMI가 아니라는 이유로 CMI 제거에 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버 테스트의 적절성과 URL의 CMI 해당 여부에 관해서 중간항소가 허가되었다. 항소심은 이들 법률문제를 심리했고, 개별 청구의 최종 당부에 대한 판단은 남겨두었다(판결문 9~11면, 49면).

2) 기사 전달 주체를 중심으로 한 현시권 침해 판단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5호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현시할 권리를 저작자가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 중 하나로 제시한다. 제101조에 따르면, 현시(display)에는 저작물을 장치나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뿐 아니라 공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달(전송)하는 행위 역시 현시에 해당하므로,[2]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행위에도 이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판결문 13~15면).

서버 테스트는 복제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자와 다른 서버의 복제물로 연결하는 링크만 제공하는 자를 구별한다. 여기에 의하면, 후자는 복제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현시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저작물의 "고정"에 관한 법상의 정의에서 그러한 보유 요건을 도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고정에는 저작물이 매체에 구현되어 일시적 기간을 넘어서 지속될 것이 요구될 뿐, 현시하는 자의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판결문 16~17면, 23~24면).

이를 대신하여 법원은 전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폈다. Framed View에서 Particle이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브라우저를 Emmerich의 서버로 연결하는 정보이고, 요청을 받아 실제 기사 데이터를 보내는 주체는 Emmerich이다. 기사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Particle이 기사 자체를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구별을 토대로 전달의 출발점과 그 전달이 허락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전달 요건(transmit requirement)"을 제시했다(판결문 25~29면).

전달의 허용 여부를 설명하면서 법원은 묵시적 이용허락과 웹사이트의 기술적 설정을 함께 검토했다. 서버 운영자는 메타태그나 임베딩 차단 기능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판단도 권한 있는 출처가 콘텐츠를 보내고, 그 출처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다만 Emmerich가 실제로 문제의 전달을 허용했는지는 환송심인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맡겼고, 권리자가 요청을 거절할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의 법적 평가는 하지 않았다(판결문 32~35면, 특히 34면 각주 14번).

이러한 판단은 링크 제공자의 직접침해 책임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권한 없는 출처에서 전달되는

2) 미국법상 public display는 매개를 통한 저작물의 전달은 물론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포괄하므로 우리 저작권법상 전시권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display를 '현시'로 옮긴다. 또한 transmit는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이라는 법정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전달'로 옮긴다.

콘텐츠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시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임베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판결문 31면 각주 12번, 36~37면).

3) URL의 저작권관리정보 해당성

CMI 쟁점은 Full-Text View에서 Emmerich의 URL이 사라지고 NewsBreak의 URL로 기사가 제공되면서 문제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202조 (c)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공연, 현시 등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정보 가운데 저작물의 제목과 식별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그러한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CMI로 정의한다. 항소법원은 URL도 이들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판결문 8~9면, 39~42면).

먼저 도메인명에 신문사의 이름이 들어 있어도 그 신문사가 현재의 저작권자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개별 신문사의 권리가 Emmerich에 양도된 사정이 있었다. URL 경로에 기사 제목과 비슷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단순한 주소를 넘어 특정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달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 제1202조 (c)(7)의 "링크"에 해당하려면 저작권 표시, 이용허락 정보 등 CMI가 제시된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법원은 환송심에서 도메인명과 권리자의 관계, URL의 안정성 및 정보 전달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판결문 42~47면).

URL이 CMI로 인정되더라도 그 삭제나 변경에 대한 책임은 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 제1202조 (b)(1)는 권리자의 허락이나 법률상 근거 없는 고의적 제거 또는 변경을 규율한다. 또한 그 제거 또는 변경이 침해를 유발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민사구제에 있어서는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항소법원은 단축 URL과 같은 통상적 이용 방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의 제거 및 변경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판결문 48~49면).[3)]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서버 테스트와 구별되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링크 제공과 저작물의 실제 전달을 나누어 직접침해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eka 및 Smith의 논평 역시 두 기준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4)] 다만 새로운 기준은 전달을 허락했는지를 함께 묻고 있다는 점에서 원 서버의 응답 방식과 요청 차단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가 앞으로의 실무에서 중요한

3) 17 U.S.C. §1202(b) 참조.

4) 〈https://www.iptechblog.com/2026/09/copyright-update-the-fifth-circuit-says-no-to-the-ninth-circuit-server-test-and-maybe-to-urls-as-copyright-management-information-cmi/〉.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판결문 29, 34~35면).

URL에 관한 판단은 URL이라는 형식만으로 CMI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구체적인 URL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실제로 전달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CMI 해당 여부는 URL에 포함된 문자열뿐 아니라 그 URL이 저작물이나 저작권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실제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Dickstein 및 Prystowsky 역시 URL의 기능적 성격 때문에 CMI 인정에는 높은 문턱이 있다고 평가한다.[5] 물론 문제의 URL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였는지와 그 제거 및 변경이 법정 책임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환송심의 심리 과제로 남아 있다(판결문 47~49면).

참고자료

- https://www.iptechblog.com/2026/09/copyright-update-the-fifth-circuit-says-no-to-the-ninth-circuit-server-test-and-maybe-to-urls-as-copyright-management-information-cmi/
-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9/emmerich-v-particle-media

5)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9/emmerich-v-particle-media〉.